

1. 개정이유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9조의4, 별지 제57호, 제58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연구 및 사업 실적을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49조의5, 별표 15 신설)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위반,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위반 등의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9조의6, 별지 제59호서식, 제60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7 신설)

지역협의체는 종자 생산대행자, 연구기관, 산림복원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함

마.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의8 신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의 절차, 방법 등 제17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함

*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신청, 현지 조사하여 결과를 60일 이내 통보

바.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심사항목 및 인증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9조의9, 별지 제61호서식, 제62호서식, 제63호서식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증명, 국산종 여부 등을 심사하고 세부사항은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생식물 종자 포장 외부에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함

사.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기록·보관하여야 할 사항 규정

(안 제49조의10 신설)

품질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채집장소, 생산장소, 수급(생산)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49조의4부터 제4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의7제8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49조의5(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42조의8제5항 및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49조의6(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의12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공급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49조의7(지역협의체 구성 등) ① 법 제42조의12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한다.

1. 법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림관련 연구기관 부서의 장
3.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의 장
4. 지방산림청 종자 관련 부서의 장
5. 그 밖에 산림복원 및 자생식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공급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기타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의8(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9(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등) ①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

증표시는 별지 제61호서식을 따르며, 자생식물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14제5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며,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자생식물 종자의 종명
2. 자생식물 종자의 여부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10(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공급·유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품종명 및 수량
2. 채집장소
3. 생산장소
4. 수급자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49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42조의8제5항제1호 법 제42조의12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의8제5항제2호	시정명령 2개월	시정명령 2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의12제6항제2호	시정명령 2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의12제6항제2호	시정명령 2개월	시정명령 2개월	지정취소
라. 운영실적 평가결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법 제42조의8제5항제3호 법 제42조의12제6항제3호	시정명령 2개월	시정명령 2개월	지정취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더 이상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42조의8제5항제4호 법 제42조의12제6항제4호	시정명령 2개월	지정취소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현황 1부 2. 조직도 또는 사무(업무)분장 현황 1부 3.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기관·단체의 일반현황을 포함합니다) 5.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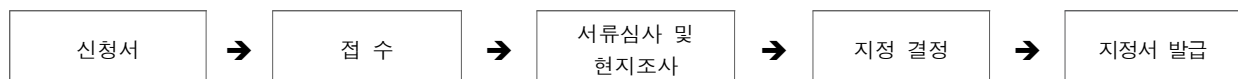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장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문인력 및 포지 등 시설 현황 1부 2. 조직도 또는 사무(업무)분장 현황 1부 3.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기관의 일반현황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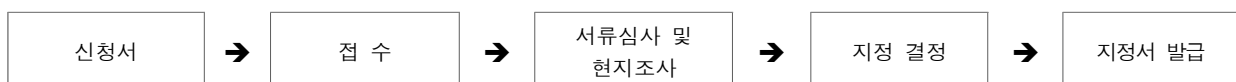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장

발급번호 제 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서

1. 기관의 명칭: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소재지: (전화번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로 지정합니다.

이
호
이

산림청장 직인

자생식물 종자 인증 표시

○ 표시 사항: 자생식물 종자 인증 표시

○ 표시 방법



○ 표시 기준

- ① 인증번호: 자생식물 종자 인증번호
- ② 종명: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자생식물 기준으로 표시
- ③ 인증기관명: 자생식물 종자 인증검사를 수행한 기관
- ④ 채취(생산)장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명 표시
- ⑤ 수량: kg
- ⑥ 발아율: %
- ⑦ 효율: %
- ⑧ 생산자: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명
- ⑨ 채취(생산)년도: 4자리 년도
- ⑩ 유효기간: 월

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 분	[] 야생 [] 재배포				
식 물 명	채취(생산)장소	채취 연월일	채취량(kg)	시료수량(kg)	인증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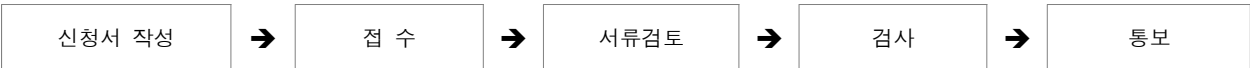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장소, 생산자 등) 현황 1부(재배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목원장(비조림종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조림종자)

인증번호 제 - - 호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 분	[] 야생 [] 재배포			
식 물 명				
소집단 번호(lot number)				
소집단 중량(kg)				
채취(생산)장소				
발아율(%)				
효 율(%)				
유효기간(월)				
인증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직인

첨부서류	자생식물 인증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9조의4(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영 제48조의7제8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 <u>2. 사업계획서</u> <u>3.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 <u>②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u>
<u><신 설></u>	<u>제49조의5(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42</u>

<신 설>

조의8제5항 및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49조의6(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의12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공급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신 설>

제49조의7(지역협의체 구성 등)

① 법 제42조의12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한다.

1. 법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림관련 연구기관 부서의 장

3.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의 장

4. 지방산림청 종자 관련 부서의 장

5. 그 밖에 산림복원 및 자생식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공급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기타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8(자생식물 종자의 손실 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9조의9(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등) ①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지 제61호서식을 따르며, 자생식물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14제5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며,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자생식물 종자의 증명
2. 자생식물 종자의 여부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산

<u><신 설></u>	<u>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49조의10(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공급·유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u> <u>1. 품종명 및 수량</u> <u>2. 채집장소</u> <u>3. 생산장소</u> <u>4. 수급자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u>
---------------------------	---